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수행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개발」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202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057호]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관리지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

I.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대구' 플랫폼에서 실증 및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개발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억원(1개 사업)

구분	방식 및 내용	지원금	사업 수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확산	(자유공모)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4억원	1개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5년 5월 1일(7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자기부담금 계산양식 참조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전담기관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국비 및 지방비 교부방법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3월 26일 ~ 2025년 4월 15일 14:00까지
 - ※ 접수기한 전 까지 접수를 완료한 신청에 한함
 - ※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안내서 참조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대학,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은 민간기업으로 한정)
 - 컨소시엄 기업은 모두 대구 소재(신청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제안내용) 별첨된 안내문 참조 必
-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는 민간기업, 대학, 기관 참여 가능
 -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주관기업 50%이상)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름(붙임1 참조)
- (선정제외) 각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III.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IV.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4월 11일~ 4월 15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DIP 대표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관련문의)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 ABB혁신본부 권준범 책임 (bjk@dip.or.kr, 053-655-5612)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aegu Digital Innovation Promotion Agency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관련)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최근 3년이내)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 개인: 23년 재무제표
-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23년 12월말 재무제표,
-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ex: 24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